


— 산업정책 www.kcca.or.kr

- 
- 10인 이상 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 원자재가격관련 불공정거래센터 설치
 - 공정위,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시행
 - 中企 청년 취업인턴제 대폭 완화
 -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2년 연장
 - 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3D업종 근로자에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

10인 이상 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중기청	042-481-4513
중소중앙회	02-2124-3381
대한상의	02-6050-3425
산업단지공단	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	02-890-0617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병역지정업체를 정할 때에는 전문계 고교 출신자를 포함해 청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기청이 주관한 채용박람회 참여한 기업 등이 우대를 받는다. 아울러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평가배점도 현행 최대 10~15점에서 15~25점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한 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된다.

연구개발(R&D) 투자기업 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확인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할 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

정률과 최하점수 등을 관련 정보를 인터넷 웹상에 공개해 희망업체가 자사의 점수와 선정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안정적 기술·기능 인력을 공급해 주고, 청년층이 전문 기술·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작년에는 총 1천700개 신청업체 중 344개 업체가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전년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

병무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연말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정하고,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이나 이들 해당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자재가격관련 불공정거래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와 함께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

해 신고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관련 경쟁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답합, 출고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와 제품 구매업체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으로 판매가격 담합,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거부·불이행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고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등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TEL 2023-4010, FAX 2023-4548

공정위,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이를 일방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오는 7월26일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하고 올 하반기에 이런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적극 보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벌점·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이를 반영토록 올 하반기에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대기업들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 하도급법을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명단공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조치 등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청년 취업인턴제 대폭 완화

앞으로는 휴학이나 졸업 예정자도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년 취업인턴 참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력직 요건을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해 6개월 이상인 자'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통산 6개월 이상인 자'가 적용돼 대졸자나 휴학생은 중소기업 취업 인턴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탓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을 모두 합하면 6개월이 넘는 경우까지 인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노동부는 대학 휴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최종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도 사실상 직장경력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력직 배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전문대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역시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인턴 참여가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대졸자는 일반적으로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턴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최종 학기 재학 중에 취업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최종학기 재학 여부를 학교에서 발행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이울러 인턴제 운영기관과 시행기업의 역할을 구분해 지도·감독 기능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인턴제 운영기관이자 실시기업이 인턴을 스스로 알선해 채용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취업 기회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인턴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최종 학기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정부지원 인턴사업 때도 대학 및 전문대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2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금년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하고,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창업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의 일몰시한 2년 추가 연장('10.8.3 → '12.8.3)을 통해,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제8606호 부칙 제2항 개정)

* 부담금 면제 실적('07.8.3~'09.12.31) : 2,606개 업체, 약 620억원

분사 창업기업이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계약에 의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법

제39조의3)분사 기업이 공공구매 입찰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필요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법 제39조의4) 한편, 중소기업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창업지원시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4조제3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신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였다. (법 제4조의2)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09, 460억원 → '10, 494.4억원), 아이디어상업화('09, 250억원 → '10, 275억원),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09, 180억원 → '10, 250.4억원)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 국무회의('10.3.30)→국회 제출('10.4.5)→상임위 의결('10.4.23)→본회의 의결('10.4.29)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2010년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향후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법 개정안 발효시까지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창업진흥과 이순배(042-481-4429)

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3D업종 근로자에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 김동선)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지침(고시)을 개정하여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3D업종 근로자에 주택 공급을 확대 지원한다.

'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제도는 주택공급업체가 중소기업근로자용으로 주택을 배정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입주 희망자를 선정 후 주택공급 업체에 추천하고 있으나(연 1,500호)

이번 5월3일 부터 시행하는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50인 미만 소기업일 경우 심사 배점을 확대(15점→25점)하였고,

* 소기업 및 종사자 규모('08, 제조업) : 309천개(중소기업 97%), 1,764천명(중소기업67.9%)

대부분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 근로자 우대를 위해 6개 제조기반분야* 근로자(가점 5점)와 연소득 17백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점 3점)에 대해서 가점을 신규 반영하여 많은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6개 제조기반분야 : 주물, 금형,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분야

또한, 주택공급 지원 대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49개→60개, 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김대희 인력지원과장은 '주택특별공급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평형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문의 : 인력지원과 이지호(042-481-4395)